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6호 2019. 3. 4.(월)

훈 령

- 목포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발령 ----- 2

고 시

- 2019년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m³당 부과 금액 고시 ----- 5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6

공 고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 8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9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 목포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2

회람							
----	--	--	--	--	--	--	--

목포시 훈령 제819호

「목포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3월 4일

목 포 시 장

목포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목포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단원들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제1항 별표1의 기준을 변경

(당초)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출산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변경)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 제17조제2항 “4인 이상” 을 “5인 이상” 으로 수정
- 제17조제3항 “**교육문화사업단장**” 을 기획문화국장으로 수정
- “제7조제2항 표” 삭제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연가) ②단원들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7조(연가)② 단원들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징계위원회 구성)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4인</u>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 구성)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5인</u>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u>교육문화사업단장</u> ,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안무자, 연출자, 기타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시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u>기획문화국장</u> ,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안무자, 연출자, 기타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시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목포시 고시 제2019-39호

2019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m³당 부과금액 고시

2019년도 수도시설에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1m³당 부과금액을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목 포 시 장

◇ 다 음 ◇

1. 2019년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총 공사비(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를 당해 수도시설의 생산량(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

2. 1m³당 원인자 부담금 : 342,000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원인자부담금 (1m³당)	522,000	513,000	511,000	490,000	324,000	335,000	342,000	전년대비 증) 7,000원

3.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목포시 고시 제2019-4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목포시 고하대로 804	2019.03.04	건물멸실
2	목포시 영산로 495	2019.03.04	건물멸실
3	목포시 삼학로373번길 14-1	2019.03.04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9-271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목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19년 3월 4일 ~ 2019년 3월 17일
2. 운행정지 명령 등록 예정일 : 2019년 3월 18일 이후
3. 공고대상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63무7710	그랜저	김*남
		송*철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됨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할 예정이오니 정당한 권리 없이 운행을 금하며,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상속 또는 명의이전 등)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356, 3557, 81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272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목 포 시 장

1. 사유: 목포시 공인 글씨체 변경

2. 등록 및 폐기일: 2019. 3. 4.(월)

3.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목포시장인 민원사무전용		3.0cm*3.0cm 푸른전남체	
폐기	목포시장인 민원사무전용		2.4cm*2.4cm 푸른전남체	

목포시 공고 제2019-278호

입 법 예 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 급여를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림으로써 단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개정
 -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위배되는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개정
 - 교향악단 : 105명 → 80명
 - 무용단 : 49명 → 50명
 - 소년소녀합창단 : 79명 → 80명
 - 연극단 : 32명 → 30명
- (제4조 개정, 별표 8)
- 시립예술단 급여 인상
 - 교향악단 : 1.8% 인상(2019 공무원 보수 인상률)
 - 인상액 : 26,000천원
 -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 8.1% 인상
(교향악단의 85% 수준)
 - 인상액 : 66,228천원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개정)

○ 시립예술단 호봉 단일화

- 교향악단 : 30호봉(현재와 동일)
-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 23 → 30호봉

(제5조제1항 별표 2 개정)

○ 공연수당 신설 : 28,800천원

- 예술단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10]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별표 10 신설)

· 수 당 액 : 1인당 30만원/년(30,000원 × 10회)

· 지급기준 : 시가 주최·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 시 지급

3. 규칙 개정안 : 별도 첨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6. 관련부서의견

- 부패 영향 평가 검토 : 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 없음

7. 예산상황 : 121,028천원 인상

8. 입법예고 : 2019. 3. 4(월) ~ 3. 25.(월) /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없음

10.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문화예술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7),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061-270-80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문화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에 다음 기준 범위 내에서 단원을 둘 수 있다.**단체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5조 (실비보상)

④예술단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10]**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 및 신설규정[별표10]은 2019. 4. 1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교육문화사업단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기획문화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의 다음 기준 범위 내에서 단원을 둘 수 있다. 1. 교향악단 - 부지휘자 1명 - 악장 1명 - 단무장 1명 - 수석연주자 17명 - 차석연주자 14명 - 정단원 28명 - 준단원 22명 - 연구단원 10명 2. 무용단 - 훈련장 1명 - 단원 47명 3. 성인합창단 - 단무장 1명 - 반주자 1명 - 단원 75명 - 부지휘자 1명 4. 소년소녀 합창단 - 단무장 1명 - 반주자 1명 - 안무자 1명 - 단원 75명 5. 연극단 - 연출자 1명 - 단무장 1명 - 단원 30명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기준 범위 내에서 단원은 둘 수 있다.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8]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신설>	제5조 (실비보상) ④예술단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10]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1]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1 - 1	899,500	673,800	225,700	1 - 1	911,600	685,900	225,700
1 - 2	981,100	741,600	239,500	1 - 2	994,400	754,900	239,500
1 - 3	1,054,400	802,000	252,400	1 - 3	1,068,800	816,400	252,400
1 - 4	1,120,300	855,100	265,200	1 - 4	1,135,700	870,500	265,200
1 - 5	1,173,700	896,400	277,300	1 - 5	1,189,800	912,500	277,300
1 - 6	1,218,700	931,100	287,600	1 - 6	1,235,500	947,900	287,600
1 - 7	1,256,800	958,800	298,000	1 - 7	1,274,100	976,100	298,000
1 - 8	1,289,600	986,500	303,100	1 - 8	1,307,400	1,004,300	303,100
1 - 9	1,321,500	1,013,200	308,300	1 - 9	1,339,700	1,031,400	308,300
1 - 10	1,357,000	1,039,300	317,700	1 - 10	1,375,700	1,058,000	317,700
1 - 11	1,387,000	1,064,900	322,100	1 - 11	1,406,200	1,084,100	322,100
1 - 12	1,416,900	1,089,900	327,000	1 - 12	1,436,500	1,109,500	327,000
1 - 13	1,447,400	1,115,000	332,400	1 - 13	1,467,500	1,135,100	332,400
1 - 14	1,478,800	1,139,500	339,300	1 - 14	1,499,300	1,160,000	339,300
1 - 15	1,511,100	1,164,900	346,200	1 - 15	1,532,100	1,185,900	346,200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1 - 16	1,554,000	1,202,700	351,300	1 - 16	1,575,600	1,224,300	351,300
1 - 17	1,592,700	1,236,200	356,500	1 - 17	1,615,000	1,258,500	356,500
1 - 18	1,635,500	1,273,900	361,600	1 - 18	1,658,400	1,296,800	361,600
1 - 19	1,671,800	1,303,300	368,500	1 - 19	1,695,300	1,326,800	368,500
1 - 20	1,709,800	1,332,600	377,200	1 - 20	1,733,800	1,356,600	377,200
1 - 21	1,743,400	1,357,700	385,700	1 - 21	1,767,800	1,382,100	385,700
1 - 22	1,786,300	1,395,400	390,900	1 - 22	1,811,400	1,420,500	390,900
1 - 23	1,824,300	1,424,800	399,500	1 - 23	1,849,900	1,450,400	399,500
1 - 24	1,859,100	1,451,000	408,100	1 - 24	1,885,200	1,477,100	408,100
1 - 25	1,896,000	1,479,300	416,700	1 - 25	1,922,600	1,505,900	416,700
1 - 26	1,932,100	1,508,500	423,600	1 - 26	1,959,300	1,535,700	423,600
1 - 27	1,968,400	1,538,000	430,400	1 - 27	1,996,100	1,565,700	430,400
1 - 28	2,006,500	1,567,400	439,100	1 - 28	2,034,700	1,595,600	439,100
1 - 29	2,042,500	1,596,600	445,900	1 - 29	2,071,200	1,625,300	445,900
1 - 30	2,228,800	1,743,300	485,500	1 - 30	2,260,200	1,774,700	485,500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상임단원 월 봉급표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2 - 1	817,500	593,500	224,000	2 - 1	865,600	641,600	224,000
2 - 2	854,300	624,200	230,100	2 - 2	904,900	674,800	230,100
2 - 3	885,200	649,600	235,600	2 - 3	937,800	702,200	235,600
2 - 4	920,500	679,400	241,100	2 - 4	975,500	734,400	241,100
2 - 5	955,500	708,400	247,100	2 - 5	1,012,900	765,800	247,100
2 - 6	981,100	727,900	253,200	2 - 6	1,040,100	786,900	253,200
2 - 7	1,005,700	747,400	258,300	2 - 7	1,066,200	807,900	258,300
2 - 8	1,028,100	764,500	263,600	2 - 8	1,090,000	826,400	263,600
2 - 9	1,050,200	781,600	268,600	2 - 9	1,113,500	844,900	268,600
2 - 10	1,072,400	798,500	273,900	2 - 10	1,137,080	863,180	273,900
2 - 11	1,095,000	816,000	279,000	2 - 11	1,161,100	882,100	279,000
2 - 12	1,115,400	832,900	282,500	2 - 12	1,182,900	900,400	282,500
2 - 13	1,137,400	849,800	287,600	2 - 13	1,206,200	918,600	287,600
2 - 14	1,162,600	869,900	292,700	2 - 14	1,233,100	940,400	292,700
2 - 15	1,179,600	881,600	298,000	2 - 15	1,251,000	953,000	298,000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2 - 16	1,200,000	896,900	303,100	2 - 16	1,272,600	969,500	303,100
2 - 17	1,221,800	911,800	310,000	2 - 17	1,295,700	985,700	310,000
2 - 18	1,260,500	941,500	319,000	2 - 18	1,336,800	1,017,800	319,000
2 - 19	1,302,500	974,500	328,000	2 - 19	1,381,400	1,053,400	328,000
2 - 20	1,329,700	992,800	336,900	2 - 20	1,410,100	1,073,200	336,900
2 - 21	1,380,000	1,034,100	345,900	2 - 21	1,463,800	1,117,900	345,900
2 - 22	1,426,200	1,071,500	354,700	2 - 22	1,512,900	1,158,200	354,700
2 - 23	1,477,800	1,112,700	365,100	2 - 23	1,567,900	1,202,800	365,100
				2 - 24	1,611,800	1,237,900	373,900
				2 - 25	1,657,000	1,274,100	382,900
				2 - 26	1,703,400	1,311,300	392,100
				2 - 27	1,751,100	1,349,600	401,500
				2 - 28	1,800,100	1,389,000	411,100
				2 - 29	1,850,600	1,429,600	421,100
				2 - 30	1,902,400	1,471,300	431,100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3]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3-1	3,500,800	2,863,600	637,200	3-1	3,552,300	2,915,100	637,200
3-2	3,563,900	2,907,900	656,000	3-2	3,616,200	2,960,200	656,000
3-3	3,628,900	2,953,000	675,900	3-3	3,682,100	3,006,200	675,900
3-4	3,695,700	2,999,100	696,600	3-4	3,749,700	3,053,100	696,600
3-5	3,763,900	3,045,800	718,100	3-5	3,818,700	3,100,600	718,100
3-6	3,834,300	3,093,600	740,700	3-6	3,890,000	3,149,300	740,700

[별표4]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상임연출자 월 봉급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호 봉	계	본 봉	예능수당
4-1	2,375,500	2,004,100	371,400	4-1	2,537,800	2,166,400	371,400
4-2	2,454,700	2,076,900	377,800	4-2	2,622,900	2,245,100	377,800
4-3	2,536,900	2,152,500	384,400	4-3	2,711,300	2,326,900	384,400
4-4	2,622,000	2,230,700	391,300	4-4	2,802,700	2,411,400	391,300
4-5	2,710,100	2,311,800	398,300	4-5	2,897,400	2,499,100	398,300
4-6	2,801,200	2,395,900	405,300	4-6	2,995,300	2,590,000	405,300

[별표8] <개정>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	정 원
교 향 악 단 (8 0 명)	지 회 자	1 명
	부 지 회 자	1 명
	단 무 장	1 명
	악 장	1 명
	수 석 연 주 자	1 7 명
	차 석 연 주 자	1 4 명
	단 원	4 5 명
무 용 단 (5 0 명)	안 무 자	1 명
	훈 련 장	1 명
	단 원	4 8 명
합 창 단 (8 0 명)	지 회 자	1 명
	부 지 회 자	1 명
	단 무 장	1 명
	반 주 자	1 명
	단 원	7 6 명
소 년 소 녀 합 창 단 (8 0 명)	지 회 자	1 명
	단 무 장	1 명
	안 무 자	1 명
	반 주 자	1 명
	단 원	7 6 명
연 극 단 (3 0 명)	연 출 자	1 명
	단 무 장	1 명
	단 원	2 8 명

[별표10] <신설>

공연수당(제5조 관련)

단체명	공연수당	비 고
목포시립예술단	30,000원	1회 당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19-279호

입 법 예 고

『목포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악의 보존 육성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시립국악원 단원의 처우를 개선코자 관련 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국악원 원감, 교수 및 강사 급여 인상 : 1.8%인상(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 인상액 : 5,900천원/년
 - 단원(4명) : 원감 1, 교수 2, 강사 1
(제6조 관련 별표2)
- 공연수당 신설
(제6조제6항 별표5 신설)

3. 규칙 개정안 : 별도 첨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6. 관련부서의견

- 부패 영향 평가 검토 : 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 없음

7. 예산상황 : 5,900천원 인상

8. 입법예고 : 2019. 3. 4(월) ~ 3. 25.(월)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없음

10.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문화예술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7),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061-270-80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조 (실비보상)

④국악원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5]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 및 신설규정[별표5]은
2019. 4. 1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 (실비보상) ⑥국악원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5]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별표 2]

교수 및 강사 실비보상 기준

(단위 : 원)

현						
구 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원 감	1,523,000	1,054,600	127,900	64,000	176,500	100,000
교 수	1,395,100	1,054,600		64,000	176,500	100,000
강 사	1,153,900	877,400			176,500	100,000
개						
구 분	계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원 감	1,542,000	1,073,600	127,900	64,000	176,500	100,000
교 수	1,414,100	1,073,600		64,000	176,500	100,000
강 사	1,169,700	893,200			176,500	100,000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5] <신설>

공연수당

단체명	공연수당	비 고
목포시립국악원	30,000원	1회 당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목포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